

현행 제도와 정부안 국회 의결안 주요내용 비교

구 분		현 행	기존 정부안	최종 국회 의결안
공 통	차별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별도 규정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차별금지 - 최종 국회안과 동일 ▪ 차별시정 절차 - 최종 국회안과 동일 ▪ 차별여부 입증책임 - 명문규정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차별금지 - 기간제·단시간·파견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 명문화 ▪ 차별시정 절차 -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, 조 조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-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- 차별시정방식을 차별행위의 중지, 근로조건 개선명령,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 ▪ 차별여부 입증책임 - 사용자
	사용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별도규정 없음(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에 제한 규정 없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용기간 3년으로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용기간 2년으로 제한
기 간 제	사용기간 초과시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별도규정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해고의 제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-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, 결원 근로자 대체 등의 경우 예외 인정
	초과근무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제한 (1주 12시간, 50%할증임금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종 국회안과 동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제한(1주12시간) ▪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
단 시 간 근 로	근로조건 서면명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 및 지불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서면명시 의무 부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종 국회안과 동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임금, 근로계약기간,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 부과

구 분	현 행	기존 정부안	최종 국회 의결안	
파 견 근 로	파견대상 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ositive list 방식으로 규정 파견대상업무를 전문지식·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※ 시행령에서 26개 직종을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Positive list 방식 유지 파견대상업무에 '업무의 성질 등'을 추가 ※ 구체적 파견대상업무는 시행령으로 규정
	파견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(고용의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3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대 2년 파견기간 초과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 부과. 다만, 고령자(55세 이상)는 기간제한 없음
	불법파견 고용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 규정없음 벌칙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종 국회안과 동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명시 대상업무 위반, 기간위반 무허가파견 : 2년 경과시 절대금지업무 위반 : 즉시 벌칙 신설 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(3천만원 이하)
	불법파견 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벌 양형 상이 파견사업주 :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 :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종 국회안과 동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처벌 양형 통일(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) 파견 및 사용사업주 :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시행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규정사항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06.1월 시행 차별금지 시행 : 300인 미만 사업장은 08'1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'07.7.1 시행 다만,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 300인 이상 · 공공부문 : '07.7.1 100인 ~ 299인 : '08.7.1 100인 미만 : '09.7.1 	